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㊐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/ 대리 고영옥(6573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519호

시행일자 2016. 12. 30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고시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- 268호(2016. 12. 29)
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63호, 2016.12.28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하여 온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내용]

○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변경

○ 유전자검사 급여기준 신설 및 유전자명 추가

○ 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기준 신설

※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&A 참조

[시행일]

○ 격리실 입원료 : 2016. 12. 30.

○ 내시경 세척소독료 : 2017. 1. 1.

○ 유전자검사 : 2017. 2. 1.

붙임: 고시개정문 1부 및 Q&A 2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